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3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박용갑・복기왕・윤종군

문진석 · 정준호 · 이해식

김남근 • 한준호 • 박민규

이훈기 · 김동아 · 박해철

허성무 • 추미애 의워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 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편성·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

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 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동산교부세·소방교 부세 및 안전교부세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소방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100 분의 89
- 6. 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100 분의 11

제9조의4의 제목 중 "소방안전교부세의"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및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소방교부세"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소방교부세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인력의 인 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의5 중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동산교부세,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를 "소방교부세(이하 "소방교부세"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 (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 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 산교부세・소방교부세 및 안전 교부세----. 세로 구분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생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 5. 소방교부세: (제1항제3호의 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산액 × 100분의 89 <신 설> 6. 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100분의 11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교부세 및 안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부세의 교부) ① 소방청장은 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 및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 소방교부세-----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 <후단 삭제>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u>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와,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u>부동</u>
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
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전교
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
<u>다만, 소방교</u>
부세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u>부동</u>
산교부세, 소	_방교부	세 및	안전
교부세			